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 등 〉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34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안 제4조의2제2항)	2
2. 입장권등 부정판매 벌칙 상향 및 몰수·추징 근거 신설(안 제40조 등)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0.

다. 회 부 일 : 2024.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한 자는 가중처벌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안 제4조의2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누구든지 입장권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의2제2항).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생략) ② 누구든지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입장권등</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¹⁾ 제4조의2제1항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동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1)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 조치를 우회한 사전 접속 등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어 현행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²⁾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했던
현행법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 수단과 관계없이 모
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판매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입장권등 부정판매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아이디 옮기
기’, ‘대리 티켓팅’³⁾ 등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부정판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암표 신고게시판의 신고건수가 2020년 359건에서 2023년
2,16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⁴⁾하였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8월 26일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의결하
면서 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의 전면 금지, ②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③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판매 정
가’로 개선, ④ 암표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한 바 있음.

3) 대리 티켓팅이란 암표 거래 업체가 구매자의 아이디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아 구매자의 계
정으로 직접 예매를 해주는 방식이고, 아이디 옮기기란 이미 암표 거래 업체가 확보한 입장권
등을 취소함과 동시에 구매자의 계정으로 예매하는 방식을 의미함.

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암표 신고게시판은 신고된 암표 의심 사례를 티켓 예매처에 송부하여 소
명요청 및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암표 신고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8.
신고건수	359건	785건	4,224건	2,161건	1,364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압표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에서의 압표 거래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압표 거래까지 「공연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 「경범죄 처벌법」과 「공연법」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압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⁵⁾에 근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는 이 경우의 범칙금액을 16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연법」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압표 거래에 대해서만 그 수단과 관계 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압표 거래를 분리하여 규정하거나, 또는 온·오프라인에서의 압표 거래 행위를 포괄하여 「공연법」에서 금지하도록 하고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거나,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압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검토⁶⁾하여야 할 것으로 봄.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압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6) 현행 「경범죄 처벌법」이 1983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통신망이 보편화된 이후에도 개정이 되지 않아 온라인에서의 압표 매매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관련하여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압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려는 3건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압포 판매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압포를 근절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오프라인 부정판매는 「경범죄 처벌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부정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⁷⁾임.

○ 참고로,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압포 매매를 금지하고 벌칙 수준을 강화하는 동법 개정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음⁸⁾.

- 또한, 동법 외에도 압포의 제재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프로스포츠 경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스포츠 경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 이용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상영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 법률안이 제안되었음.

7)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안 제4조의2제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의견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입장권등을 -----.	②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 등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입장권등을 -----.

8) 하단 참고자료 참조

[참고: 압표 매매 관련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명	제안자	주요 내용	제안일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u>공연 입장권</u>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2024.8.19.
	조계원의원 등 13인		2024.10.7.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4.10.11.
	김준혁의원 등 10인		2024.11.6.
	강유정의원 등 10인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2024.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u>운동경기 입장권</u>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2024.8.19.
	조계원의원 등 13인		2024.10.7.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8.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4.10.11.
	김준혁의원 등 10인		2024.11.6.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12.10.
	강유정의원 등 10인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2024.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 무관 <u>영화 입장권·관람권</u> 등 부정판매 금지 등	2024.1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u>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u> 등 압표판매 금지 등	2024.10.18.
	김준혁의원 등 11인		2024.1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u>체육시설 이용권</u> 의 부정판매 금지 등	2024.1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온·오프라인 불문 압표매매 행위 처벌	2024.9.27.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21.
	조인철의원 등 12인		2024.12.1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기차 승차권 등의 압표 판매 금지 등	2024.11.6.
	이연희의원 등 19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차 승차권 구매 금지	2024.1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 금지	2024.12.10.

2. 입장권등 부정판매 벌칙 상향 및 몰수·추징 근거 신설(안 제40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40조제1호 신설 및 제41조제1호 삭제)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 수준을 상향함.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42조의2 신설).
- 상습적인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음(안 제42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1. ~ 6. (생략)	제40조(벌칙) ----- ----- -----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41조(벌칙) ----- ----- ----- ----- ----- <u><삭제></u> 2.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2조의3(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40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 그러나 최근 100만원 이상의 고가로 암표가 거래되어 암표 판매로 얻는 이득액의 규모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¹⁰⁾ 거래액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기존의 벌칙 규정이 암표 거래로 얻는 이득에 비해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액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습적인 입장권등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장권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형의 가중 근거를 신설하는 안 제42조의3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조의2는 부정판매를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미 부정판매 행위의 구성요건에 상습성 및 영업성이 포함되므로, 상습적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0) 김주원 기자, “‘임영웅·아이유 티켓 팔아요’...암표 사기로 6억원 챙긴 30대 실형’, 매일신문, 2024.1.16.,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11619054749618>
 이유진 기자, ‘변우석 표 30배 폭리, 뮤지컬 암표로 1억 수익...‘티켓 되팔이’들 무더기 검거’, 한국일보, 2024.10.1.<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112360003820?did=NA>

-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의 경우, 해당 범죄행위의 구성 요건에는 상습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형의 가중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③ <u>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밀향단속법	제3조(밀향·이선 등) ① 밀향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밀향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형의 가중) <u>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9조(상습범) <u>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	---

-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제재 강화를 위한 벌칙 수준 상향 및 몰수·추징 근거 마련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나, 현행법상 ‘부정판매’의 구성요건에 ‘상습성’과 ‘영업성’이 포함되므로 ‘상습성’에 대한 가중처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